

http://www.motie.go.kr

보도자료



2019년 6월 10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다갓, ㅎㅎ, ㅎ천는 0.10.(절) 오천 10.20 이후 모모 가능)			
배포일시	2019. 6. 7(금)	담당부서	자유무역협정이행과
담당과장	신지현 과장(044-203-5760)	담 당 자	김선애 사무관(044-203-5762)

브렉시트에 대비한 「한-영 자유무역협정(FTA)」 원칙적 타결

노딜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-영 무역·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

- 韓통상교섭본부장-英국제통상부장관, 「한-영 FTA」 원칙적 타결 선언 -

- □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(Liam Fox)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6.10.(월) 서울에서 「한-영 자유무역협정(FTA)」 협상의 워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.
- 이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(EU) 탈퇴(브렉시트) 시에도, **EU에서**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 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.
- □ 그간 양국은,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(*16.6월)된 이후 신속히 '한-영 무역작업반'을 설치(*16.12월)하여 비공식 협의를 개시하였다.
-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(노딜 브렉시트)하는 상황*이 가시화된 '19.1월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(emergency bridge agreement) 성격의 한-영 FTA 추진에 합의하였고,
 - * 영국이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여 한-EU FTA 적용 중단
- **단기간 집중적인 협의**를 통해 **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**를 거두었다.

[한-영 FTA를 통한 통상관계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]

- □ 금번 한-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(emergency bridge agreement)로서 기존 한-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-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.
- 특히,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,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*에 대비하여 **종합적·선제적 대응** 방안을 마련하였다.
 - * 노딜 브렉시트, 브렉시트 이행기간 확보, 브렉시트 시한 추가 연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
- □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하여 **양국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**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둔 바,

(상품 관세)

- 먼저,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-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.
- 이에 따라, 자동차(10%^{*}), 자동차 부품(3.8~4.5%^{*}) 등 **우리 주요 수출 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**할 수 있게 되었다.
 - * 현재 對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中 99.6% 무관세(공산품 100%, 농산물 98.1%), 한-영 FTA 未체결시 평균 4.73% 수출 관세 부과
- **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***(ASG)는 **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**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**발동기준을 낮추고**,
- * 쇠고기, 돼지고기, 시과, 설탕, 인삼, 맥아 맥주맥, 발효주정, 변성전분, 감자전분 등 9개 품목
- **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**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하여 **관세율할당**(TRQ)**을 제공**키로 하였다.

(원산지)

- 원산지의 경우,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·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하여,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,
- 운송과 관련하여,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 으로 인정하여,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수출하여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.

(지적재산권)

- 지적재산권 관련하여, **영국측 주류 2개 품목**, **우리측 농산물·주류 64개** 품목에 대해 **지리적 표시로 인정**하고 보호를 지속키로 합의하였다.
 - ※ 주요 지리적 표시
 - 한국(64개): 보성녹차. 순창전통고추장. 이천쌀. 고려홍삼. 고창복분자. 진도홍주 등
 - 영국 (2개): 스카치위스키, 아이리시 위스키(국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 보호)

(기타)

○ 아울러,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**수출입 행정수수료**에 대한 **투명성을** 한-미 FTA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, 우리기업의 수요가 큰 **투자** 규범은 2년 내 검토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금번 협정에 반영하였다.

[한-영 FTA 협정 개선 근거 마련]

- □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, 추후에 **한-EU FTA 플러스 수준**으로 2년 내 **협정을 업그레이드**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.
- 특히,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하여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동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합의하였고,
- 우리의 관심사항인 **투자, 무역구제 절차,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 고려**하기로 하였다.

[포괄적 경제협력 강화]

- □ 아울러,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**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**하기 위해 **협력 잠재력이** 높은 5대 전략분야^{*}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 - * 산업혁신기술, 에너지, 자동차, 중소기업, 농업
- 산업혁신기술 공동 R&D 협력, 에너지 분야 수소경제 및 원자력 협력, 자동차 파트너쉽 구축,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, 농업 분야 지식 공유 등 **양국간 협력을 고도화**하고 **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**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.

「항후 계획]

- □ 양측은 한-영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**조속한 시일 내**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치고,
- 이후,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**국내 이해**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.
- 특히, **브렉시트가 올해 10.31일 예정**되어 있어 **그 전에 한-영 FTA가 발효**되어 노딜 브렉시트에도 對영국 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**비준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**할 예정이다.
- □ 유명회 통상교섭본부장은 "금번 한-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,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"고 평가하면서,
 - "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"이라고 강조하였다.

- □ 또한, 영국측 리암 폭스(Liam Fox) 국제통상부 장관은 "금번 영-한 FTA 원칙적 타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의 지속성을 마련한 것은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, 이는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"이라고 언급하고,
- "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**긴밀한 영-한 무역 관계**는 영국과 한국의 **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**을 할 것"이라고 강조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김선애사무관(☎ 044-203-5762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